

의안
번호

368

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
검 토 보 고 서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2021. 09. 08.

전문위원 김 동 성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나. 의안번호 : 제368호

다. 제출일자 : 2021. 08. 23.

라. 회부일자 : 2021. 08. 26.

2. 제안이유

-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 신규 위탁 및 기존 국공립어린이집 중 위탁기간이 2022년 2월에 만료되는 시설 11개소의 재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대상 :

- 신규위탁 대상 :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(가칭 리슈빌 어린이집)
- 재위탁 대상 : 꿈꾸는 어린이집 등 11개소

나. 위탁체 선정 : 성북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로 선정

다. 위탁사업의 범위 :

-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
-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2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)

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)

5. 검토의견

가. 동의안의 개요

- 본 동의안은 ‘국공립 어린이집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(이하“ 민간위탁 조례”)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2022년 3월 준공 예정인 보문 리슈빌 하우트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가 신규 설치 예정임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려는 것이고, 개원일로부터 5년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이며,
- 기존 국공립어린이집 중 꿈꾸는 어린이집 등 11개소는 2021년 2월 28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위탁하려는 것임. 위탁대상현황은 다음과 같음.

〈신규위탁시설 현황〉

시설명 (가칭)	소재지 및 규모	설치방법	위탁기간	정원 (명)	소요예산	비고
리슈빌 어린이집 (가칭)	보문동1가 60-28번지 (보문 리슈빌 하우트) 2022.03. 준공 예정 연면적 : 273㎡ 보육시설 면적: 123㎡	공동주택 무상임대	개원일로 부터 5년	41	160백만원 (국60, 시92, 구8)	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를 통해 확충 승인

〈재위탁 대상 시설현황〉

연번	시설명(원장)	소재지(행정동)	현 위탁체(대표)	현 위탁기간	정원 / 현원
1	꿈 꾸 는 (박 진 희)	북악산로 813 (정릉1동)	개 인 (박 진 희)	2017.03.01. ~ 2022.02.28.	20 / 18
2	꿈 사 랑 (김 현 미)	종암로23길 35 (종암동)	개 인 (김 현 미)	2017.03.01. ~ 2022.02.28.	16 / 13
3	꿈 초 롱 (소 은 덕)	서경로 31 (정릉2동)	개 인 (소 은 덕)	2017.03.01. ~ 2022.02.28.	20 / 18
4	라파엘엔젤 (나 이 정)	솔샘로24길 15 (정릉4동)	개 인 (나 이 정)	2017.03.01. ~ 2022.02.28.	20 / 17
5	바 다 (김 인 석)	북악산로 828 (정릉1동)	개 인 (김 인 석)	2017.03.01. ~ 2022.02.28.	20 / 20
6	사랑샘몬테소리 (김 성 미)	오패산로 46 (월곡1동)	개 인 (김 성 미)	2017.03.01. ~ 2022.02.28.	20 / 19
7	선 경 (조 영 아)	종암로24가길 53 (종암동)	개 인 (조 영 아)	2017.03.01. ~ 2022.02.28.	20 / 20
8	자 연 샘 (이 미 경)	한천로101길 18 (장위3동)	개 인 (이 미 경)	2017.03.01. ~ 2022.02.28.	20 / 20
9	키 즈 맘 (서 경 혜)	북악산로 844 (돈암2동)	개 인 (서 경 혜)	2017.03.01. ~ 2022.02.28.	20 / 20
10	하 늘 채 (김 미 영)	한천로 509 (석관동)	개 인 (김 미 영)	2017.03.01. ~ 2022.02.28.	20 / 18
11	혜 연 (이 은 자)	종암로24가길 53 (종암동)	개 인 (이 은 자)	2017.03.01. ~ 2022.02.28.	20 / 20

※ 재위탁 시설 11개소는 기존 가정 어린이집에서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심의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시설임.

다.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

- 「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제1항제3호1)는 특수한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의 경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동 보육 업무는 타 업무와 달리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라는 점에서 민간위탁 대상 사무라 할 수 있음.
- 또한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2) 및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」(이하 “영유아 보육조례”) 제13조제1항3)에 “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”고 명시되어 있고, 같은 조례 제14조제1항에서 위탁기간 만료 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1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2)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 ①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3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」 제13조(위탁운영) ① 국공립어린이집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고 한다) 제2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.

제14조(위탁기간)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, 위탁기간 만료 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모집하거나 재위탁 할 수 있다. 다만,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구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자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재위탁 사항을 협약 내용을 기준으로 당사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.

라. 위탁기간 및 선정방법 등의 적정성

- 위탁기간은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24조의2 별표 8의24), 「영유아 보육조례」 제14조제1항5) 따라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고, 수탁기관 선정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체 선정 및 재위탁 하려는 것으로 적합하다 판단되며, 위탁업무의 내용은 통상적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제반사항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마. 종합의견

-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신규 및 재위탁 동의안은 「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,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, 본 사무의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.

4)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[별표 8의2]

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(제24조의2 관련)

다.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. 다만,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5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」

제14조(위탁기간)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, 위탁기간 만료 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모집하거나 재위탁 할 수 있다. 다만,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구에 기부체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자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재위탁 사항을 협약 내용을 기준으로 당사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.